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부분발췌)

제132조의 2 (자동차등록의 세율) 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
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
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